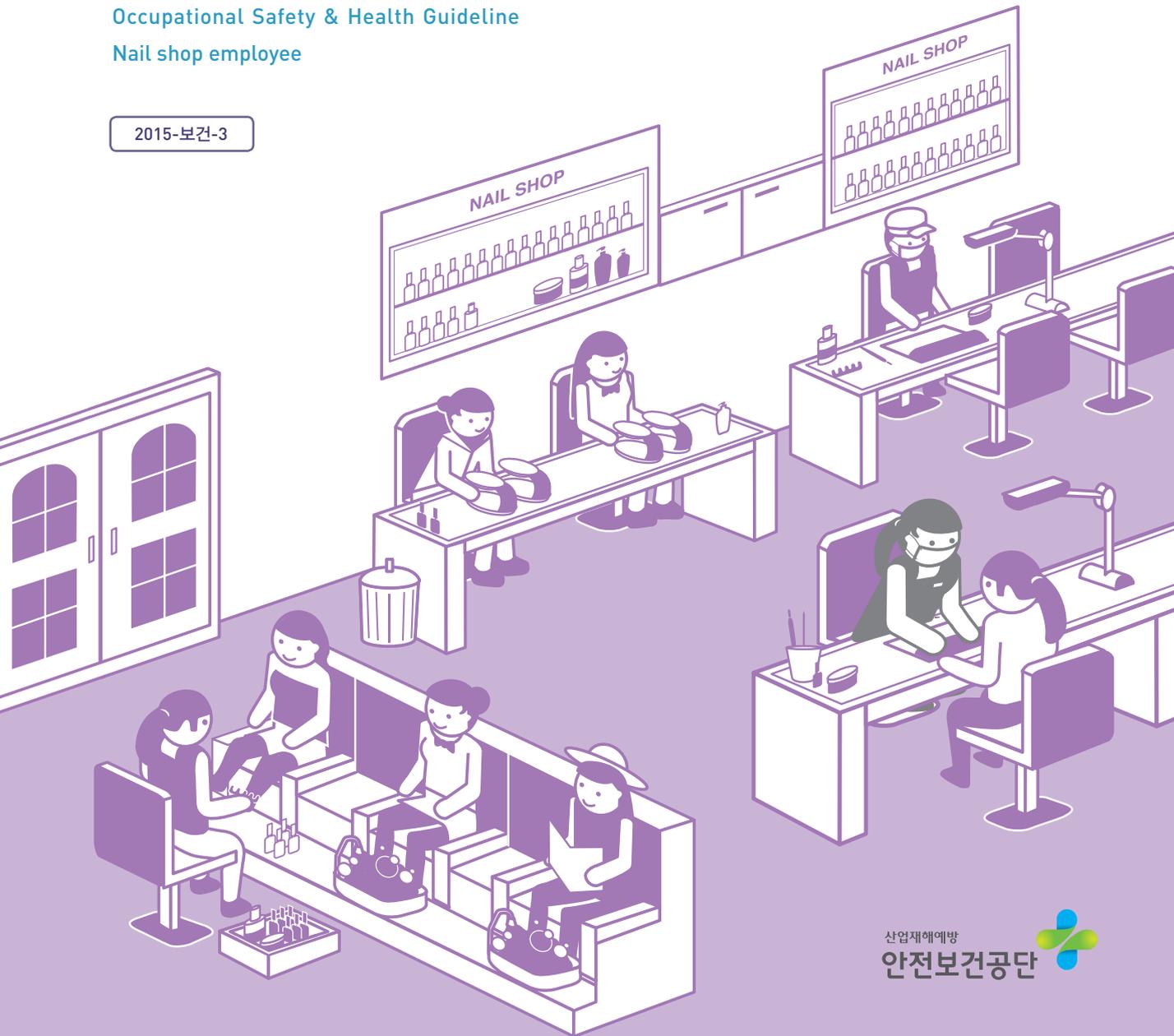




네일샵 종사원

Occupational Safety & Health Guideline
Nail shop employee

2015-보건-3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네일샵 종사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이란?

Guideline

- KOSHA GUIDE*와는 달리 직업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
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까지
포함한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
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현장사진(삽화 등)을
수록하여 쉽고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입니다.

KOSHA GUIDE*

- 법령에서 정한 사항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만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
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네일샵 종사원

Occupational Safety & Health Guideline
Nail shop employee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종별로 직업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고유 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발대상 직종을 선정한 후, 가톨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직업환경의학·간호·위생·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뢰하여 2012년도에 10개, 2013년도에 10개, 2014년도 10개의 주제와 직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2012년 개발 직종

- ① 환경미화원 ② 병원청소원 ③ 영양보호사^(시설요양원) ④ 간호사 ⑤ 택시운전원
- ⑥ 건물청소원 ⑦ 물류종사원^(창고업종) ⑧ 매장판매 종사자 ⑨ 사무종사자^(IT)
- ⑩ 보건관리자^(사무지침 개정)

• 2013년 개발 직종 및 주제

- ① 콜센터 종사원 ② 이미용 종사원 ③ 도장공 ④ 용접원 ⑤ 차량정비원
- ⑥ 항만하역 종사원 ⑦ 오페수시설 종사원 ⑧ 야간 및 교대작업 ⑨ 근로자 우울증
- 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2014년 개발 직종 및 주제

- ① 항공기 객실승무원 ② 음식서비스업 종사자 ③ 철도기관사 ④ 네일샵 종사원
- ⑤ 유지보수작업 종사원 ⑥ 유류사고 방제 작업자 ⑦ 감정노동 종사자^(총괄)
- ⑧ 소음성난청 예방관리 ⑨ 건설업 보건관리자 역할 ⑩ 하절기 폭염대비

‘네일샵 종사원’의 경우 최근 네일샵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유해물질들의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네일샵 종사원’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한 후,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및 KOSHA GUIDE 등 관련 지침과 국내·외 연구동향 및 외국의 사례도 소개하였습니다.

작성된 내용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자 노·사·정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고할 수 있는 안내서입니다. 또한 본 책자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요약본’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이드라인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현장의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및 관련 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가이드라인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01 배경		
		1. 사회적 관심 증가	12
		2.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13
		3. 다양한 직업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14
	02 일반 현황		
		1. 네일샵 종사원의 정의	16
		2. 네일샵 종사원의 근무현황 및 특성	17
		3. 관련법령	18
		4. 안전보건실태	21
	03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		
		1. 이미용 종사원의 산업재해	24
		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26
		3. 산업재해 사례	28
	04 네일샵 종사원의 유해·위험요인		
		1. 작업환경 요인	30
		2. 작업조건 요인	32
		3. 건강문제 요인	34
		4. 사고관련 요인	36

	05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1. 작업환경 관리	38
		2. 작업조건 관리	41
		3. 건강문제 관리	44
		4. 사고요인 관리	49
	06 부록		
		1. 네일샵 종사원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52
		2. 네일샵 종사원 관련 KOSHA GUIDE	53
		3. 네일샵 종사원 유관단체 명단	54
		4. 자주하는 질문과 답 FAQ	55

***연구팀**

연구책임자 - 성균관대 김수근 교수
 공동연구원 - 가톨릭대 정혜선 교수, 가톨릭대 장태원 교수, 가톨릭대 이종은 교수, 성균관대 김원술 교수, 성균관대 한복순 교수, 한림대 권영준 교수, 한림대 정윤경 교수, 울산대 이복임 교수, 한양대 노영만 교수

표 차례	1. 이미용 종사원의 발생형태별 산업재해	13
	2. 업종별 응답자의 근로시간	17
	3. 네일샵 종사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18
	4. 네일샵 종사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19
	5. 안전교육	21
	6. 보호구 착용	21
	7. 안전보건 개선 요구사항	22
	8. 이미용 종사원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24
	9. 이미용 종사원의 업무상질병의 종류	25
	1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현황	26
	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발생형태	27
	12. 네일샵 종사원이 많이 사용하는 유기용제의 분류	30
	13. 직무스트레스 증상완화법	42
	14. 감정노동 관리방법	43

그림 차례	1.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의 발전단계	34
	2. 손목의 무리한 동작	35
	3. 목의 무리한 동작	35
	4. 전염성질환 노출가능	35
	5. 배기장치가 포함된 작업대	38
	6. 물질안전보건자료 예시	39
	7. 다리의 피로를 푸는 체조	46
	8. 안면마스크 ^(N95s)	47

chapter 01 배경

- 사회적 관심 증가
-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 다양한 직업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01. 사회적 관심 증가

1. 사회적 관심 증가

*피부미용업에 종사 인원
24,301명

- 최근 이미용 업계가 활성화되면서 이 분야의 종사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따라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24,301명으로 나타남 (2011년 기준).
 - * 출처: 통계청 (2012). 『2011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 네일샵 종사원은 부적절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어깨, 목, 손가락 등에 근골격계질환이 많이 발생하며, 고객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적 식사 및 청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전염성 질환, 유해물질 흡입, 피부질환 등)으로 인한 다양한 건강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산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 네일분야는 64.6%인 것으로 조사됨.
 - * 출처: 김인아 등 (2012). 『미용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건강영향 연구』
-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네일샵 종사원의 건강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네일샵
종사원의
건강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 국민일보 (2014.01.29) : 네일아티스트의 소리없는 비명
- 헬스조선 (2013.06.19) : 손 습진 가볍게 여기면 우울·불면 등 삶의 질 떨어져
- 이데일리뉴스 (2011.12.09) : 이·미용업 노동자 20만 시대. 화학물질 노출 '비상'
- 서울경제 (2010.10.15) : 포름알데히드 덮힌 네일숍·피부미용실

02.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1.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 이미용 종사원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산업재해건수는 연간 약 52~60건임.



* 출처: 안전보건공단 (2013). 『이미용 종사원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 주요 산재 발생 형태는 넘어짐, 동물상해, 절단·베임·찢림, 부딪힘 등의 사고와 작업관련성질환 등임.

표 1 이미용 종사원의 발생형태별 산업재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넘어짐	21 (35.0)	17 (31.5)	18 (34.6)
동물상해	9 (15.0)	8 (14.8)	11 (21.2)
절단·베임·찢림	10 (16.7)	7 (13.0)	5 (9.6)
부딪힘	4 (6.7)	2 (3.7)	4 (7.7)
작업관련질환(뇌심 등)	5 (8.3)	3 (5.6)	1 (1.9)
맞음	2 (3.3)	2 (3.7)	3 (5.8)
이상온도·물체접촉	4 (6.7)	1 (1.9)	1 (1.9)
끼임	0 (0.0)	4 (7.4)	1 (1.9)
기타(감전, 무너짐, 폭력행위 등)	5 (8.4)	10 (18.4)	8 (15.3)

* 출처: 안전보건공단 (2013). 『이미용 종사원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단위: 명, %

03. 다양한 직업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1.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 네일샵 종사원들은 유기용제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호흡기계, 피부질환이 발생하고, 고객 응대로 인한 감정업무에 종사하여 직무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과 불규칙적인 식사로 소화장해를 호소하고 있음.

***유기용제 인한 노출**

- 호흡기계
- 피부질환

***고객 응대로 인한 감정업무**

- 직무스트레스
- 근골격계질환
- 소화장애

다양한 직업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네일샵 종사원의 안전 보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chapter 02 일반현황

- 네일샵 종사원의 정의
- 네일샵 종사원의 근무현황 및 특성
- 관련법령
- 안전보건실태



01. 네일샵 종사원의 정의

1. 네일샵 종사원의 정의



기본케어



컬러링



왁싱



발관리

• 네일샵 종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에 속하고 있는데,

- 이는 머리를 자르고 다듬는 이·미용사, 피부 관리·화장 등 고객의 용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애완동물 미용사, 패션코디네이터 등 기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말함.
- 손톱관리사는 네일 아티스트와 같이 손 마사지, 손톱 정리, 각피 제거, 매니큐어 작업 등으로 손을 가꾸고 손톱관리 및 손톱에 장식을 제공하는 직업을 말함.

* 출처: 통계청 (2007), 『한국표준직업분류』

• 주요 수행 업무

분야	네일
업무 내용	기본케어 · 컬러링 · 왁싱 · 발관리



손톱관리사

02. 네일샵 종사원의 근무현황 및 특성

1. 근무현황 및 특성

- 네일샵 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인아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 네일분야 종사원들은 1일 평균 9.0시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48.5시간으로 나타남.
- 네일샵 종사원이 주로 호소하는 건강문제를 살펴보면,
 - 네일분야 종사원은 위염 43.9%, 그 다음으로 안구건조증 43.1%, 피부염, 습진 37.9%, 빈혈 28.3%, 불면증 24.2% 순으로 나타남.

표 2 업종별 응답자의 근로시간

구분	네일분야
1일 평균 근로시간	9.0 ± 1.5
1주일 평균 근로시간	48.5 ± 16.1

* 출처: 김인아 등(2012). 『미용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건강영향 연구』



위염



불면증

03.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 ‘네일샵 종사원’이 종사하는 ‘이미용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며, 대부분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적용범위 등) 제1항에 의한 [별표 1] ‘법의 일부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임.
- 이미용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건강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고,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건강진단등을 실시해야 함.

표 3 네일샵 종사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관계법령	세부내용	항목
제5조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야 함. 1.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산업재해 예방 시책 준수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증진)
제10조 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고의 의무)
제11조 제1항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를 상시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제72조 제4항 제1호	* 위 조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제12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안전표시 부착 등의 의무)
제72조 제4항 제3호	* 위 조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네일샵 종사원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의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해야 하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 요인조사 및 예방대책과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등을 실시해야 함.

표 4 네일샵 종사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항목	세부내용
제3조 (넘어짐 방지)	•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제4조 (작업장의 청결)	•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제79조 (휴게시설)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647조 (공기정화설비 가동)	• 근로자가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함.
제649조 (사무실공기 평가)	•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실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657조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함
제658조 (유해요인 조사방법)	•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와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제659조~제661조 (유해요인 조사결과)	• 유해요인 조사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 개선을 하여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사업주에게 통지하여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하여야 함.
제661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성 주지)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기타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자(시설이용자) 건강을 위하여 조명, 오염 물질, 공기관리 상태 등을 규정대로 관리해야 함.

해당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

-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근로자(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함

해당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실내공간오염물질]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별표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04. 안전보건실태¹⁾

1. 안전교육

- 근로자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65명 중 55.0% 이었고, 받지 않은 경우가 45.0% 이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569명 중 88.8%가 필요하다, 11.3%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근로자 안전교육

565명 중
- 받았다 55.0%
- 받지 않았다 45.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필요성

569명 중
- 필요하다 88.8%
- 필요하지 않다 11.3%

표 5 안전교육

항목	구분	빈도(%)
안전교육	받음	311(55.0)
	받지 않음	254(45.0)
물질안전보건자료 필요성	필요하다	505(88.8)
	필요없다	64(11.3)

2. 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

- 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 여부는 568명 중 61.4%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으며, 38.6%가 착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 여부

568명 중
- 착용 61.4%
- 미착용 38.6%

표 6 보호구 착용

항목	구분	빈도(%)
보호구 착용여부	착용	349(61.4)
	착용안함	219(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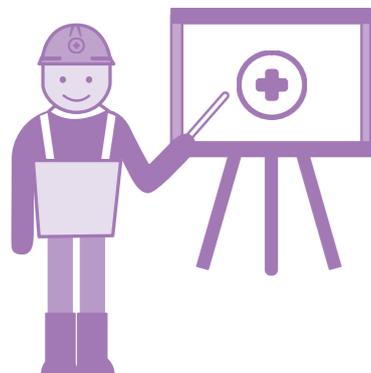
주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미용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건강영향 연구'(김인아 등, 2012)의 결과를 활용하여 네일샵종사원의 안전보건실태를 파악함.

3. 안전보건 개선 요구사항

- 안전보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직원 전용휴식공간마련이 23.1%, 근무시간에 대한 법적제제 22.4%, 4대 보험 보장 20.0%,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12.2%, 환기장치 설치 12.1%, 안전교육 실시 8.4% 순 이었음.

표 7 안전보건 개선 요구사항

항목	구분	빈도(%)
개선요구사항	직원전용 휴식공간	368(23.1)
	근무시간에 대한 법적제제	356(22.4)
	4대보험 보장	319(20.0)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195(12.2)
	환기장치 설치	192(12.1)
	안전교육 실시	134(8.4)
	기타	28(1.8)



chapter 03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

- 이미용 종사원의 산업재해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 산업재해 사례



01. 이미용 종사원의 산업재해



1. 산업재해

***사고성 재해**
91.7~96.2% 차지

***업무상 질병**
3.8~8.3% 차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²⁰¹³⁾에 따른 이미용 종사원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60명이었으며, 2011년 54명, 2012년에는 52명이었음.
- 이 중 사고성 재해가 91.7~96.2%를 차지하였고, 업무상 질병이 3.8~8.3%를 차지하였음.
- 사망자는 사고사망자와 업무상 질병 사망자를 합쳐 연간 0~1명임.

표 8 이미용 종사원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항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사고성 재해	부상	54 (98.2)	49 (98.0)	50 (100)
	사고 사망	1 (1.8)	1 (2.0)	0 (0)
	소계	55 (91.7)	50 (92.6)	50 (96.2)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이환	5 (100)	4 (100)	2 (100)
	업무상 질병 사망	0 (0)	0 (0)	0 (0)
	소계	5 (8.3)	4 (7.4)	2 (3.8)
계		60 (100)	54 (100)	52 (100)

* 출처: 안전보건공단(2013). 『이미용 종사원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단위: 명, %



***근골격계질환**
최근 3년간 업무상
질병 중 36% 차지

- 최근 3년간 이미용 종사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근골격계질환이 36% (4명)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9 이미용 종사원의 업무상 질병의 종류

항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업무상 질병	직업병(기타)	0 (0.0)	1 (25.0)	1 (50.0)
	근골격계질환	2 (40.0)	1 (25.0)	1 (50.0)
	작업관련성질환(기타)	3 (60.0)	2 (50.0)	0 (0.0)
계		5 (100)	4 (100)	2 (100)

* 출처: 안전보건공단(2013). 『이미용 종사원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단위: 명, %



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2012년 - 2,375건

*전체 산업재해자수

92,256건
2.57%를 차지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는 2012년에 2,375건으로, 전체 산업재해자수 92,256건의 2.57%를 차지함.
- 산업재해율은 1.15%, 사망천인율은 0.20%로, 전체 산업재해율 0.59%와 사망천인율 0.12%보다 높음.

표 1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현황(2012년)

구분	전 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수(개소)	1,825,296	15,882
근로자수(명)	15,548,423	205,280
총 재해자수(명)	92,256	2,375
재해율(%)	0.59	1.15
사망자(명)	1,864	41
사망천인율(‰)	0.12	0.20

* 출처: 고용노동부(2012). 『산업재해 현황분석』

- 2012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 넘어짐 686명(28.9%), 떨어짐 365명(15.4%), 부딪힘 201명(8.5%), 절단 174명(7.3%) 순으로 발생하였음.
 - 업무상질병은 178명(7.5%)이었음.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표 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발생형태(2012년 기준)

구분	명	%
넘어짐	686	28.9
떨어짐	365	15.4
부딪힘	201	8.5
절단·베임·찢림	174	7.3
업무상 질병	178	7.5
사업장의 교통사고	122	5.1
맞음	143	6.0
끼임	170	7.2
무리한 동작	114	4.8
이상온도 기압접촉	21	0.9
화재	9	0.4
동물상해	20	0.8
총계	2,37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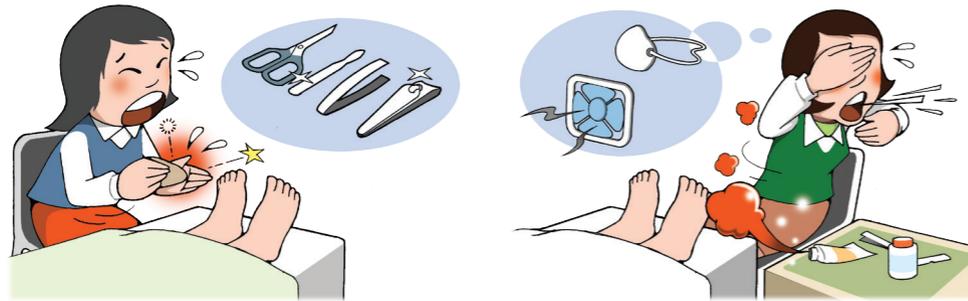
* 출처: 고용노동부(2012). 『산업재해 현황분석』

03. 산업재해 사례

1. 산업재해 사례

- 이미용 종사원에게 발생한 주요 산업재해 사례

구분	발생 과정	예방 대책
손상 및 안전사고	네일 아트 작업 중 각질제거기로 고객의 발 관리 시 잘못 사용하여 자신의 손 살점을 제거함	· 날카로운 미용도구 취급과 관련된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 미용도구의 정기적인 점검
유해물질 인자로 인한 자극증상	네일 아트 작업 중 글루드라이 사용 시 눈이 따갑거나 기침이 한동안 많이 나고 저녁 세안 후에는 피부가 빨갛게 올라옴	· 화학약품 사용 시 보호구 착용 · 화학약품 취급 시 주의사항 숙지 · 환기장치 가동 등 작업장의 환기 철저



손상 및 안전사고

유해물질인자로 인한 자극증상

chapter 04 네일샵 종사원의 유해·위험요인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조건 요인
- 건강문제 요인
- 사고관련 요인



01. 작업환경 요인



1. 화학물질 사용

- 네일샵 분야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인해서 직접적 또는 폐쇄된 공간에서 환기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체 각 부분에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유기용제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 시 그 축적현상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음.

표 12 네일샵 종사원이 많이 사용하는 유기용제의 분류

업무	작업내용	위험요인
아세톤 (Acetone)	- 인조손톱 제거제 - 매니큐어 제거제 - 시술 시 손톱 유분 제거	- 현기증, 눈과 인후의 자극, 하지의 무력감, 점막자극, 불쾌감
에틸아세테이트 (Ethyl acetate)	- 매니큐어 제거제 - 매니큐어 첨가제 - 손톱 보강제의 베이스	- 지속적인 변성 피부질환, 눈 자극
부틸아세테이트 (Butyl acetate)	- 손톱 보강제의 베이스 - 매니큐어 첨가제	- 단기노출시: 혈압변화,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조정기능 소실 - 고농도(의식불명) - 피부접촉시: 알레르기 증상 - 섭취시: 구역, 구토, 신장, 간기능 이상 - 장기노출: 호흡곤란, 두통, 피로, 수면장애, 극도의 고통, 눈 손상, 피부염
이소프로필알코올 (Isopropyl alcohol 또는 Isopropanol)	- 매니큐어 첨가제	- 호흡기도 자극, 눈 자극, 중추신경계통 억제
노말헥산 (n-Hexane)	- 매니큐어 첨가제 - 인조손톱의 접착제	- 호흡기도 자극, 피부자극, 눈 자극, 흡인 위험, 신경 이상, 중추신경계통 억제(다발성 신경염)

* 출처: 양진희, 조진아 (2008). 『네일관리 분야의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하주영 (2008) 『네일샵 근로자들의 혼합유기용제 노출량과 자각증상에 관한 연구』

2. 먼지(분진)



환기장치 설치가 되지 않은 작업대

현장의 소리²⁾

- 매니큐어가요? (톨루엔이 부정맥을 유발한다는 말을 듣고 그런 말은 처음 들어요. 그래도 사람 쓰는 건데 어떻게 잘 나오겠죠. 요즘 건 그래도 덜 독해요.”
- “(독해도) 어떡해요. 이거 쓰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냄새는 참겠는데, 먼지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 대부분 네일샵의 작업대에는 국소배기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환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먼지(분진)나 화학물질이 호흡기계로 흡입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먼지(분진)’로서, 대부분의 네일샵 종사원들이 공통적으로 ‘비염’ 또는 ‘기관지염’을 경험하거나 앓은 적이 있었음.

현장의 소리

- “먼지가 많이 날려요. 사람 손톱 먼지. 저는 비염을 달고 살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일해요.”
- “저는 비염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거든요. 그래도 낮지를 않아요. 공기청정기도 하고 하는데... 먼지가 날려서 그런 것 같아요.”
- “대개 (네일샵 종사원들이) 기관지염이나 비염이 많아요. 먼지가 많아요.”

주 2) 본 연구팀이 2014년 9월 네일샵 종사원 7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 및 현장 방문조사 결과임.

02. 작업조건 요인



1. 직무스트레스

- 적절한 휴식없이 과도하게 일하면서 직무스트레스가 증가되기 쉬움.
-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면역 및 심혈관계 장애, 심장병, 우울증, 피로, 수면부족 및 신체 전반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장의 소리

- “여자들은(손님들은) 여기(네일샵)에 기분풀러 오는 거예요. 네일 하는데 한시간동안저는 계속말동무해주는거예요. 어떤날은너무진이빠져요.”
- “저는 혼자 있어서 수다도 못 떨고, 정말(스트레스가) 쌓이면 힘들어요. 그날그날(스트레스는)쇼핑하고술먹고, 그냥(다른근로자와같이) 다 똑같이 풀어요.”

2. 감정노동

- 네일샵 종사원은 업무 종사 시간 내내 고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어 감정노동이 많이 발생함.

현장의 소리

- “손님들은 제가 애교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애교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면(애교부리고나면) 집에 들어가서 아무말도 하기 싫어져요.”
- “이게(네일아트)가 한 시간동안(손님하고)손 잡고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안하고 안웃으면 이상해요. 어쩔수 없이 점점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3. 불규칙한 식사시간

- 네일샵 종사원들은 지속적인 고객응대로 인해 식사시간이 불규칙하여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등의 위장관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4. 장시간 근무

- 고객이 이용하기 편한 시간대에 업무가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이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는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음.

현장의 소리

- “(장시간 근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제가 사장이고 종업원인데 어떡해요. 뭐 일해야죠. 그래도 우리 집(샵)은 편하고 넓은 편이에요. 손님이 없으면 저기(맛사지용 안락의자에) 누워 쉬기도 하고”
- “밤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도 해요. 저는 혼자 있으면 남자(손님의) 안받아요(서비스를 안 해줘요). 네일이 이렇게 손을 대고 하니(네일샵 종사원이 손님의 손가락을 잡고 작업을 함) 변태(이상한 사람들)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03. 건강문제 요인

1. 근골격계질환

- 네일샵 종사원의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작업대 위에 몸을 기울이고, 손톱을 갈거나 색을 칠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실시하며, 작업대의 딱딱한 표면이나 모서리가 손, 손목, 팔 및 팔꿈치에 지속적으로 닿고 눌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시간동안 통증 및 피로감 · 하룻밤 지나 아침이면 증상 없음 · 작업능력 저하 없음 · 몇 주,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룻밤 지나도 통증 지속 · 화끈거림, 통증으로 불면 · 작업능력 저하 ·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종일 통증 · 통증으로 불면 · 작업수행 불가능 · 다른 일에도 어려움과 통증동반

* 안전보건공단(2006).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종류(Sheet형 교재)』

2. 전염성 질환

- 네일샵 종사원들은 고객의 손톱 및 발톱을 직접적으로 만지기 때문에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전염성 질환에 노출됨.
- 고객의 손·발톱을 다듬는 과정에서 B형·C형 간염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손·발톱에 상주해 있던 곰팡이에 피부가 접촉되거나, 소독되지 않은 미용도구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음.



손목의 무리한 동작



목의 무리한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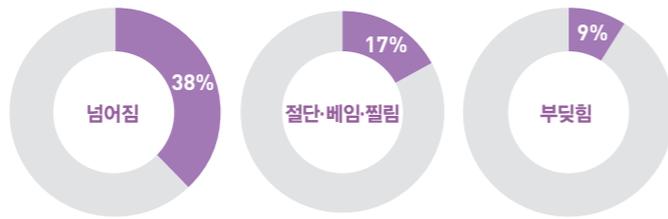


전염성질환 노출가능

04. 사고관련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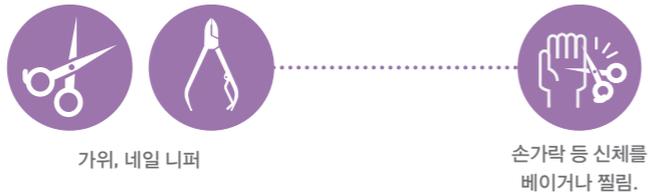
1.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부딪힘

- 바닥의 전선, 의자다리 등에 걸리거나 바닥에 흘린 물 등에 미끄러져 다치게 됨.
- 미용업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재해를 분석한 결과 넘어짐 재해가 38%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단·베임·찔림이 17%, 부딪힘이 9%이었음.



- 절단·베임·찔림은 미용도구인 가위, 네일니퍼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 신체를 베이거나 찔림. 부딪힘은 미용실내 이동, 운반 등 작업과정에서 출입문, 구조물 등과 부딪혀 발생함.

절단·베임·찔림



부딪힘



chapter 05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 작업환경 관리
- 작업조건 관리
- 건강문제 관리
- 사고요인 관리



4. 유해화학물질 처리

- 자동으로 뚜껑이 닫히는 금속제 쓰레기통을 사용하여 스팀치나 기타습기찬네일사용제품에서유해화학물질이공기중으로증발하지 않도록 함.
- 쓰레기통을 자주 비우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반드시 쓰레기통을 비우고, 쓰레기는 실내에 두지 말고 외부 쓰레기통에 버림.
- 유해화학물질은 안전한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폐기함. 싱크대에 붓거나, 땅에다 버려서는 안됨.



안전한 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폐기함

02. 작업조건 관리

1. 직무스트레스 관리

조직적 관리방안

- 네일샵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교육
-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의견교환 기회 마련
- 경력개발을 위해 연수,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개인적 관리방안

- 직무스트레스 발생 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사나 멘토를 만들어 대화를 나눔.
-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서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
-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재충전의 기회 마련

생활습관개선

- 규칙적 운동
- 올바른 식습관 유지
- 하루 7~8시간의 쾌적한 수면시간 유지
- 카페인 많이 든 커피, 차, 콜라, 초콜릿 등의 섭취 감소



표 13 직무스트레스 증상완화법

방법	내용
자기관찰	원인이 된 스트레스를 알아내기 위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양상을 일일 행동기록지에 적는 것
근육이완법	근육에 주의를 집중시켜 불필요한 긴장을 해소하는 단계적인 훈련 실시
복식호흡	양손을 아랫배에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 (코나 목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를 이용하여 숨을 쉽).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 일을 즐겁게 하도록 긍정적인 생각 갖기
자신의 감정 털어놓기	화가 났을 때 마음에 쌓아 두지 않고, 글을 쓰거나 낙서를 해서 자기감정 표출
자기 주장훈련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 등을 명확히 주장하는 방법 훈련

* 출처: 정혜선 등 (2011). 『여성근로자의 보건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2. 감정노동 관리

- 고객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 교육
- 네일샵 종사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교육

표 14 감정노동 관리방법

방법	내용
적응하기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야'하며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
일과 나와의 분리	'나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 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하며 자신과 업무를 분리하여 생각
스스로 격려하기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기 암시나 훈장말 하기
분노 조절 훈련	심호흡, 자극 피하기, 관심 바꾸기, 용서를 통한 해소로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
생각 멈추기	'그만' 하며 생각을 멈추거나 긍정적으로 생각

* 출처: 정혜선 등 (2012). 『직종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3. 불규칙한 식사시간 관리

- 교대로 순서를 정하여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량의 식사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공복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가 식사를 할 경우 배고픔으로 인해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됨.
- 업무시간에 쫓겨 급히 식사를 할 경우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영양소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사의 질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



4. 장시간 근무 관리

- 피로와 신체능력 회복을 위해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함.
- 카페인과 술은 섭취하지 않도록 함.
-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실시함.
-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함.
- 휴식은 짧게 자주하는 것이 길게 한 두 번 하는 것보다 효과적임.

03. 건강문제 관리

1. 근골격계질환 관리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확인
- 부담작업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와 유해도 평가로 구성

* 출처: KOSHA GUIDE (H-9-20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구성

조직구성 ·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 · 역할분장	교육훈련 · 교육대상 · 교육내용 및 시간 · 교육지침	유해요인 관리 · 유해요인 조사 · 유해요인 개선방법 · 개선계획서 작성·시행
의학적 관리 · 증상호소자 관리 · 질환자 관리 · 건강증진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 · 평가시기 · 평가지표 · 프로그램 보완	문서기록과 보존 · 보존대상 문서 · 보존기간

* 출처: KOSHA GUIDE (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의학적 및 관리 및 대책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작업환경개선활동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빠른 직장복귀를 위한 의학적 관리 수행
-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를 보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작업일정 및 속도 조절, 회복시간 제공, 작업 공간 및 장비의 주기적 청소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적 대책 시행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체조 등 실시
- 높낮이 조절의자 비치

- 발바닥이 바닥에 평평히 닿을 수 있고, 등이 뒤에 받쳐지도록 하여 앉음.
- 필요 시 피로예방 매트, 발받침대 등 적절한 보조 도구 사용

* 출처: KOSHA GUIDE(H-68-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소방법
- 근골격계질환 예방 위한 올바른 작업자세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 해당부서의 유해요인 개선대책 등



다리의 피로를 푸는 체조



2. 호흡기계 관리

마스크 착용

- 종이나 천으로 된 마스크는 유해화학물질을 막지 못함.
- 활성탄필터가 부착된 안면마스크 (N95s)를 사용함. 이 안면마스크는 손톱을 광택 내거나, 파일로 갈 때 도움이 됨.

안면마스크 (N95s)



3. 피부 및 눈 관리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피부는 유해화학물질이 매우 빠르고 쉽게 침습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손톱과 피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장갑 착용
- 장갑은 나이트릴 장갑이 가장 좋음.
- 장갑이 베이거나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즉시 교체
- 아크릴성 네일 제품 및 기타 분진으로부터 팔을 보호하기 위해 긴팔 셔츠나 토시 등을 착용

4. 전염성질환 관리



감염된 피부와 접촉을 피한다



깨끗한 물에 손 씻기



B형간염 예방접종 맞기



소독

- 장갑을 끼고, 근로자나 고객의 손과 발, 손톱에 베인 곳, 상처, 염증, 또는 눈에 띄게 감염된 피부와의 접촉을 피함.
- 일회용 장갑은 사용 후 즉시 버림.
- 작업 전과 후에 반드시 깨끗한 물에 손 씻기
- 고객의 피부에서 피가 나면 솜뭉치나 휴지를 건네주어 고객 스스로 닦고, 휴지통에 버리도록 함.
- B형간염 예방접종 맞기.
- 발판과 발을 담근 통은 작업이 끝난 후에 소독함.

* 출처: EPA(2007). 『Protecting the Health of Nail Salon Workers』

* 출처: OSHA(2012). 『Safety Healthy and Safe While Giving Manicures and Pedicures』

04. 사고요인 관리

1. 사고 예방

작업과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제거할 때 필요한 네일샵 종사원의 역할 교육
- 네일샵 종사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설명

안전보건수칙 준수 요령

- 제한된 실내 공간 내의 출입문, 의자 다리 등 장애물을 확인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미용도구, 전선 등 정리
- 바닥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청소와 정리 정돈 실시
- 가위, 네일 니퍼 등 날카로운 미용도구를 취급 중 베이거나 찔릴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근로자 교육 실시
- 감전위험(물을 사용하는 공간에서 전기기구 등 사용)이나 전기기구의 관리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 점검 및 안전 수칙 이행

* 출처: 안전보건공단(2011). 『재해예방 안전보건 수칙: Safty & Health 10-10』

2. 화재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주변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리고 소방기관에 신고⁽¹¹⁹⁾
- 위험물, 가연성 물질로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 형성
- 소화기 및 소방전을 이용하여 자체 진화작업 실시
- 입과 코에 물수건을 이용하여 유독가스 흡입을 막고 대피
- 내부에 갇혔을 경우 창문을 통해 위치를 알리고, 구조에 대한 신념을 가질 것

소화기 사용방법

- 평소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여, 빠르게 대응 하도록 함.
- 소화기를 바로 세워 손으로 잡음.
- 손잡이 부분에 고정된 안전핀을 당겨 뽑음.
- 소화기 노즐을 불이 난 부분을 향함.
- 사용자는 불로부터 1~5미터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
-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상부 손잡이를 강하게 누름.
- 주위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분사
- 불을 다 끈 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킴.

옥내소화전 사용법

- 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끌고 감.
- 화전함 내에 있는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
- 기동 스위치로 작동하는 것은 ON^(작동) 스위치를 누름.
- 불이 난 곳을 향해 집중적으로 방수

chapter 06 부록

- 네일샵 종사원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 네일샵 종사원 관련 KOSHA GUIDE
- 네일샵 종사원 유관단체 명단
- 자주하는 질문과 답 FAQ



1 네일샵 종사원 종사자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구분	번호	제목
고용노동부 예규	제37호(2012)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9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13-3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2013-32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013-6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2013-3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14-1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012-63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11-38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2 네일샵 종사원 관련 KOSHA GUIDE



구분	번호	제목
KOSHA GUIDE	H-4-2012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H-57-2012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H-68-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H-71-2012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 지침
	H-82-2012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지침
	M-39-2012	작업장내 인간공학에 관한 기술지침
	P-51-2012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P-58-2012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X-27-2012	화학물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관한 지침
	X-30-2012	사업장 화재 및 응급서비스에 관한 리스크 관리지침
	W-14-2012	경고표지 작성 지침
	W-15-201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H-42-2011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보호용 장갑
	H-51-2011	피부감작물질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지침
	G-62-2011	사업장의 일반안전규칙에 관한 지침
	G-72-2011	근로자 안전보건 상담에 관한 기술지침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로 들어가 상단의 '정보마당' 메뉴에서 '법령 / 지침정보'- '안전보건기술 지침 GUIDE'을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음.

3 네일샵 종사원 유관단체 명단

단체명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전화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서울 마포구 구수동 2-3 서강빌딩 5층	www.kocea.org	02.586.7343
한국네일협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114-1 백암빌딩	www.knanail.or.kr	02.720.4103
한국네일미용사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5-19 한주빌딩 301호	www.konta.kr	02.514.4140
한국메이크업협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7-15번지 금강빌딩 2층	www.kmakeup.co.kr	02.515.1485

4 자주하는 질문과 답 FAQ



1 네일샵 종사원에게는 어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나요?

화학적 유해요인

- 네일분야에서 쓰이는 메니큐어, 아세톤 등에는 유기 용제가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 또는 폐쇄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인체 각 부분에 건강문제를 일으킴.

직무스트레스

- 적절한 휴식 없이 과도하게 일하면 스트레스가 증가되기 쉬우며,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및 심혈관계 장애를 가져 오고, 심장병, 우울증, 피로, 수면부족 및 신체 전반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

감정노동

- 업무 시간 내내 고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이며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어 감정노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불규칙한 식사시간

- 지속적인 고객응대로 식사시간이 불규칙하여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등의 위장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장시간 근무

- 고객이 이용하기 편한 시간대에 업무가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이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는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음.

근골격계 질환

구분	내용	
작업적 요인	· 과도한 힘 · 부적절한 자세	· 높은 반복성 · 부족한 휴식
사회심리적 요인	· 직업 만족도 · 상사 및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 업무적 스트레스	· 근무조건 만족도 · 기타 정신, 심리상태
작업자 요인	· 연령 및 성별 · 작업경력 · 운동 및 취미활동	· 과거병력 · 작업습관 · 유전적 소인

피부질환

- 건조, 발적, 가려움, 피부박리, 갈라짐, 통증 등의 작업관련 접촉성 피부질환 발생이 발생 가능함.

2

그럼 이러한 건강위험 요인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사업장 내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자주 실내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배기장치가 없는 경우 작업 시간 중에 항상 난방이나 냉방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네일 작업이 이루어지는 즉, 근로자가 작업하는 테이블에 국소배기장치 설치하는 것입니다.
- 또한, 자동으로 뚜껑이 닫히는 밀폐형 쓰레기통을 사용하여 흡연이나 기타 습기찬 네일 사용제품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관리방법 (예, 근육이완법, 복식 호흡법,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등)을 훈련하도록 합니다.
-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위해 식사시간을 고정해 놓고, 이때는 고객 예약을 받지 않거나, 교대로 정해진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 근골격계질환 관리를 위해 짧은 휴식을 자주 취하고, 작업 전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 고객으로부터 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해 장갑을 끼고, 근로자나 고객의 손과 발, 손톱에 베인 곳, 상처, 염증, 또는 눈에 띄게 감염된 피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작업 전과 후에 반드시 깨끗한 물에 손을 씻습니다.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네일샵 종사원

- 연구책임자** • 성균관대학교 김수근
- 발행일** • 2015년 4월
- 발행인** • 이영순
-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Tel 052.703.0500
- 편집디자인** • 필드가이드
Tel 02.6375.2665

* 이 교재를 안전보건공단의 허락 없이 부분 또는 전부를
복사, 복제, 전제하는 것은 저작권 법에 저촉됩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